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3 -23)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13년 4월 23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가.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을 자체심사하였으나, 의견진술심의회를 구성·운영하여 과태료 부과에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,
- 나. 주정차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동일한 법률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

2. 주요내용

- 가. 규칙 명칭 변경
 - (현 행) 서울특별시 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
 - (개 정) 서울특별시 중구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
- 나. 위원회 기능
 -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의견진술 및 심의사항 추가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: 주차관리과장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(예관동, 중구청), 문의전화: 3396-6255, FAX: 3396-4354, 메일: stingnl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1. 서울특별시 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2. 신규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주·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
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중구 주·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중구 주·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”을
“서울특별시 중구 주·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주·정차위반”을 “주·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설치) 주·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
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·정차 및 버
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“주·정차위반”을 각각 “주·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”
으로 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단서 중 “잔여기간”을 “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자가”를 “사람이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범위 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	이 규칙은「질서위반행위규 제법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<u>주·정차위반</u> 의견진술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, 그 운영에 관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<u>주·정차위반</u>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 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	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2조(명칭 등)	① <u>주·정차위반 의견진 술심의위원회</u> 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 구 <u>주·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</u> 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 ② <u>위원회</u> 는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16조 에 따라 제출된 <u>주·정차위반 의견진술</u> 과 <u>의견진술 처리기준</u> , 서울특별시 중 구청장이 부의하는 <u>중요사항</u> 을 심의· <u>의결</u> 하기 위하여 <u>중구청</u> 에 둔다.	제2조(위원회의 설치)	<u>주·정차 및 버스</u>	<u>전용차로 위반</u> 의견진술 심의를 위하 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 장”이라 한다)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<u>주·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</u> <u>의견진술심의위원회</u> 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제3조(기능)	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하여 심의·의결한다. 1. <u>주·정차위반</u>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. <u>주·정차위반</u>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.(생 략)	제3조(기능)	----- -----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				1. <u>주·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</u> -- ----- 2. <u>주·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</u> -- ----- 3.(현행과 같음)

4.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4조(구성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외부인사가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6조(임기) ① (생략)

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. 다만,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간사) ① (생략)

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

③ (생략)

제10조(재심의)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등의 지급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4. ----- 회의에 부치는 -----
제4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사람 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남은 기간 -----

제8조(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사람이 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재심의) -----
----- 한 차례
만 -----

제11조(수당 등의 지급) -----

----- 범위에서 -----
